

#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6. 5. 2.  
제 출 자 : 서 구 청 장

## 1. 제안사유

-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계획

- 사업개요
  - 위 치 : 서구 내당동 354-7(서대구로3길 46)
  - 규 모 : 부지 728㎡ (연면적 998㎡), 지상3층
  - 사업기간 : 2009년 ~ 2017년
  - 사 업 비 : 30억원(공사비 27억, 장비구입비 3억)
- 추진현황
  - 2009. 3월 :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
  - 2012. 4월 : 중리동 90-13번지 부지매입완료(1,543백만원)
  - 2015. 12월 : 제2노인복지관 계획변경(안) 의회 의견 청취
  - 2016. 4월 : 제2노인복지관 계획변경 市 승인 완료
  - 2016. 5월 : 설계공모
  - 2016. 8월 : 건축실시설계
  - 2016. 12월 : 공사착공

### 나. 관리계획 재산

명 칭	구분	소 재 지	면적(㎡)	금 액	비 고
제2노인복지관	건물	내당동 354-7	998	27억원	

#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

[계획명 : 제2노인복지관 건립]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 득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1	998	2,700	1	998	2,700	
	매 입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교환으로 취 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기타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1	998	2,700	1	998	2,700	
		기타										
	처 분	계	토지									
건물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
매 각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양 여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멸 처 실 분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계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
#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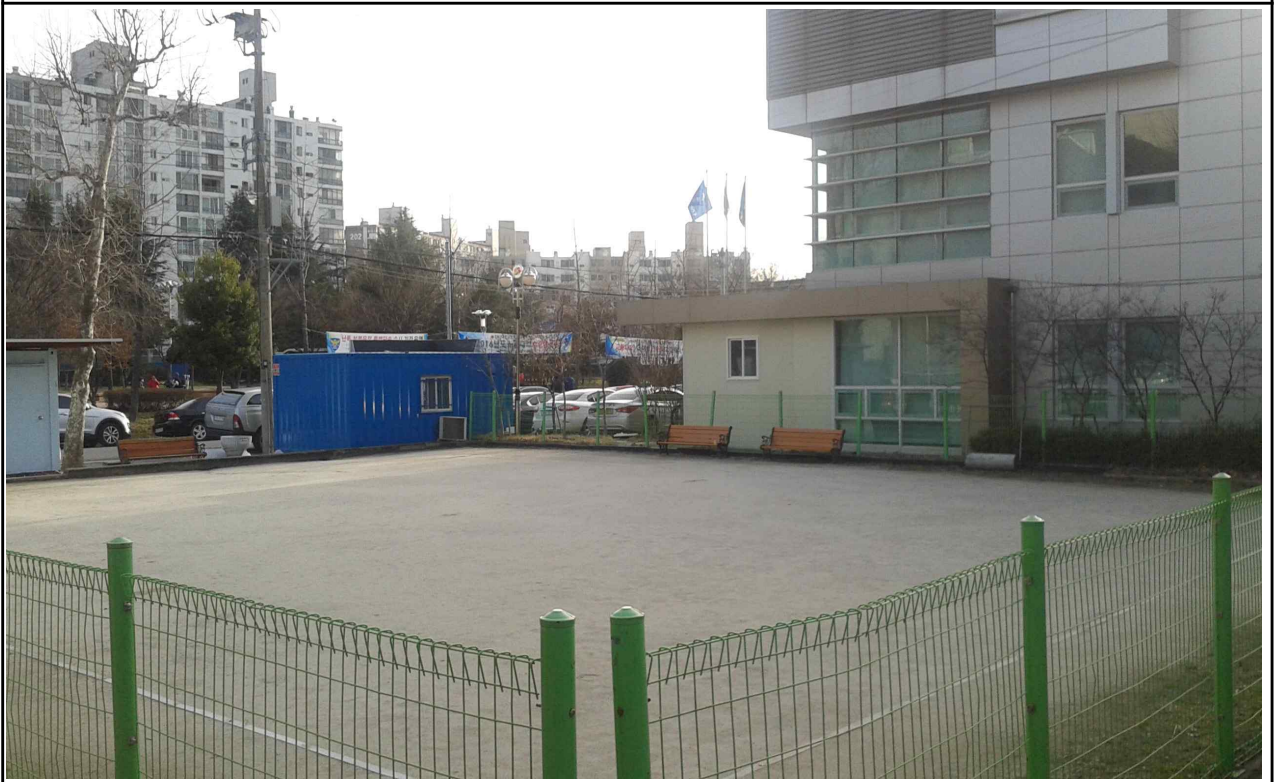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성명	비고
	지목 (용도)	소재지	면적 (㎡)					
<b>총계</b>	<b>건물</b>	<b>998</b>	<b>2,700</b>					
소계								
토지			해	당	없	음		
소계			998	2,700				
건물	건물	내당동 354-7	998	2,700	2016년 ~2017년	제2노인복지관 건립	서구청	건물 신축
		아	래		빈	칸		

# 건립예정지 위치도

□ 위치도 (내당동 354-7)



# 관 련 법 령

## 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**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**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**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
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  2. **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**
 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 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# [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]

-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,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